##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77

발의연월일: 2024. 6. 14.

발 의 자:김정호·김성환·박희승

김남희 • 신영대 • 허종식

정성호 · 정진욱 · 박해철

어기구 · 강유정 · 이연희

박 정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작업 중에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전기, 열 등에 의한 위험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명 이상이 해야 할 위험한 작업을 혼자서 하다가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이러한경우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조치 의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7조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68조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안전조치) ① ~ ③ (생	제38조(안전조치)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1조		
	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		
	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		
	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u>관찰하면서 긴급구조·구급이</u>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u>④</u> 사업주가 제1항부터 <u>제3항</u>	<u>⑤</u>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			
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			
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	제167조(벌칙) ①		
터 <u>제3항</u> 까지(제166조의2에서	<u>제4항</u>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생 략)

-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2.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168조(벌칙)
1 <u>제4항</u>
2. (현행과 같음)